

사업타당성조사지원 평가배점표

※ 평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작성

평가항목	평가세부항목	평가 배점	평가 구분	비고
사업 타당성 (20점)	① 사업의 필요성	3	정성	
	② 입지 여건	3	정성	
	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	3	정성	
	④ 사업부지 확보방안	3	정성	
	⑤ 시공계획 적정성	1	정성	
	⑥ 운영계획 적정성	1	정성	
	⑦ 판매계획 적정성	1	정성	
	⑧ 원재료 조달계획 적정성	1	정성	
	⑨ 환경·사회 영향 (리스크)	1	정성	
	⑩ 국가 경제적 기대효과	3	정성	
		소 계	20	
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의 적정성 (10점)	①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의 타당성	2	정성	
	② 사업타당성조사 비용의 적정성	4	정성	
	③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준비 현황	2	정성	
	④ 수은의 금융지원 가능성	2	정성	
		소 계	10	
사업주 역량 (20점)	① 재무상태 (대표사만 평가)	4	정량	부채비율 (1)
				차입금의존도 (1)
				영업이익 (1)
				영업이익률 (1)
	② 사업수행경험	5	정량	국내 투자개발형 사업경험 (1)
				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경험 (2)
				해당국가에 대한 사업경험 (2)
	③ 내부역량 및 의사결정절차 (대표사만 평가)	2	정량	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유무 (1)
				리스크관리부서 유무 (1)
	④ 사업주(컨소시엄) 구성의 적정성	5	정량	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
CEO, CFO 선임계획 (1)				
SPC 내부 의사결정 체계 (1)				
⑤ 사업주SPC 운영계획	4	정성	본사와 SPC간 업무보고체계 (1)	
			SPC 리스크관리 계획 (1)	
	소 계	20		

평가항목	평가세부항목	평가 배점	평가 구분	비고
사업국 및 발주처 (15점)	① 국가신용등급	2	정량	당행 국별신용등급
	② Doing Business (WB) 등급	1	정량	
	③ GDP 규모	2	정량	
	④ 총외채잔액/GDP	1	정량	
	⑤ 사업추진관련 현지 법/제도	2	정성	
	⑥ 분쟁조정	1	정량	NY컨벤션, 워싱턴 컨벤션 가입여부, 파산법 존재 여부
	⑦ 발주처의 적정성	6	정량	
	소 계	15		
자금조달 가능성 (25점)	① 사업주 신용도 (대표사만 평가)	5	정량	기업신용등급
	② 총자산규모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	2	정량	
	③ 사업주 지분율	6	정량	국내기업 지분율 (3) 국외기업 최대주주 지분율 (3)
	④ D:E Ratio	2	정량	
	⑤ 주주구성, 자본금출자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	2	정성	
	⑥ 차입금 조달계획의 적정성	3	정성	
	⑦ 차입금 상환계획	2	정성	
	⑧ 사업주의 당행·ECA·MDB 거래경험	3	정성	
	소 계	25		
리스크 경감방안 (10점)	① 완공지연 및 비용초과 리스크	3	정성	
	② 환율변동 리스크	2	정성	통화 유형, 환Indexation 여부
	③ 국가 리스크	2	정성	
	④ 판매가격변동 리스크	3	정성	고정판매가, 변동판매가 등 여부
	소 계	10		
	총 계	100		
가점 (9점)	① 국내기업간 컨소시엄	3		
	② 당행 핵심전략국 대상사업	3		
	③ 발주처 / 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사업	3		
	소 계	9		
	총 계	109		

사업타당성조사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

◆ 사업주 역량(16점)

□ 재무상태(4점, 대표사만 평가)

- 부채비율(1점) * 재무상태는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수치로 평가

< 150%	< 250%	< 350%	≥ 350%
1	0.7	0.4	0.1

- 차입금의존도(1점)

< 30%	< 40%	< 50%	≥ 50%
1	0.7	0.4	0.1

- 영업이익(1점)

최근 3년 모두 영업이익 시현	최근 3년중 최근 1년 포함 2년 영업이익 시현 ¹⁾	최근 1년 영업이익 시현	해당없음 ²⁾
1	0.7	0.4	0.1

주: 1)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 시현 또는 최근 1년과 전전년도 영업이익 시현

예) 최근 결산년도가 '19년인 경우, '19년과 '18년 또는 '19년과 '17년 영업이익 시현

2) 3년 연속 적자 또는 비교연도 없음

- 영업이익률(1점)

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률 증가	최근 1년 영업이익률 증가	해당없음 ^{주)}
1	0.7	0.4

주) 영업이익률 변동 없음, 비교연도 없음 또는 감소

□ 사업수행경험(5점)

- 사업수행경험 : 국내 투자개발형 사업경험(1점)

- 금융계약종결 기준 건수로, 사업주로 참여하는 각 개별기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

3건 이상	2건	1건	해당없음
1	0.7	0.4	0

◦ 사업수행경험 :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경험(2점)

- 금융계약종결 기준 건수로, 사업주로 참여하는 각 개별기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

3건 이상	2건	1건	해당없음
2	1.4	0.8	0

◦ 사업수행경험 : 해당국가에 대한 사업경험(2점)

-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개발형사업(1점) : 1건 이상 1점, 해당없음 0점
- 해당국가에 대한 EPC사업경험(1점)

* 단, 투자개발형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EPC 사업경험이 없어도 2점 부여

3건 이상	2건	1건	해당없음
1	0.7	0.4	0

□ 내부역량 및 의사결정절차(2점, 대표사만 평가)

◦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유무(1점)

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	전담조직 미보유, 전담인력 보유	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미보유
1	0.5	0

- 리스크관리부서 유무(1점) : 보유 시 1점, 미보유 시 0점

□ 사업주(컨소시엄)^{주)} 구성의 적정성(5점)

◦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(5점)

3개사 이상	2개사	단독 참여
5	3	1

주) 국내/외 사업주 모두 포함(단, FI 제외)

◆ 사업국 및 발주처(13점)

□ 국가신용등급(2점)

B2 이상	C1~C3	D1	D2	E
2	1.7	1.4	1.1	0.8

□ Doing Business (WB) 등급(1점)

~50위	51~100위	101~150위	151~190위	190위 이상
1	0.8	0.7	0.6	0.4

□ GDP 규모(2점)

(달러)

≥3,000억	≥1,500억	≥650억	≥150억	< 150억
2	1.6	1.2	0.8	0.4

□ 총외채잔액/GDP(1점)

< 20%	< 30%	< 50%	< 100%	≥ 100%
1	0.8	0.6	0.4	0.2

□ 분쟁조정(1점)

- 뉴욕 컨벤션, 워싱턴 컨벤션, 파산법 존재 중 해당 건수로 평가

3가지 모두 해당	2가지 해당	1가지 해당	해당없음
1	0.7	0.4	0

□ 발주처의 적정성(6점)

정부	공기업(공공기관 포함)	민간
6	4	2

◆ 자금조달 가능성(15점)

□ 사업주 신용도(5점, 대표사만 평가)

- 당행 여신거래기업

P3+ 이상	P3 ^o ~P3-	P4+ ~ P4 ^o	P4- ~ P5+	P5 ^o ~ P5-	P6	SM
5	4.5	4	3	2.5	2	0

주) 당행 신용등급 기준으로 평가

- 당행 여신 미거래기업(권소시업 대표사가 당행 여신거래기업이 아닌 경우)

A+이상	A, A-	BBB+,BBB	BBB-	BB+	BB	BB-이하 등급 미보유
5	4.5	4	3	2.5	2	0

주) 국내 신용평가기관(한신평, 한기평, 한신정) 기업 신용등급 기준으로 평가

□ 총자산규모^{주)} 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(2점)

< 5%	< 10%	< 30%	< 50%	≥ 50%
2	1.7	1.4	1.1	0.8

주) 최근 결산연도 기준 국내 사업주 자산 합계

□ 사업주 지분율(6점) * 사업주 지분율이 미정이 경우, 최저점 부여

◦ 국내기업 지분율^{주)} (3점)

≥ 50%	≥ 40%	≥ 30%	≥ 20%	< 20%
3	2.7	2.1	1.5	0.6

주) 전체 사업주 지분율 중 한국기업의 출자 지분율의 합계

◦ 국내기업 최대주주 지분율^{주)}(3점)

≥ 50%	≥ 40%	≥ 30%	≥ 20%	< 20%
3	2.7	2.1	1.5	0.6

주) 사업주로 참여하는 한국기업(단, FI 제외)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

□ D:E Ratio^{주)}(2점)

≥ 40%	≥ 30%	≥ 20%	≥ 10%	< 10%
2	1.6	1.2	0.8	0.4

주) Equity 기준으로 평가

◆ 가점(9점)

□ 국내기업간 컨소시엄(3점) : 구성원의 지분참여를 기준으로 평가

- 가점 제외 : 자/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, 계열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, 단순 가점을 목적으로 임의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□ 당행 핵심전략국 대상사업(3점) : 방글라데시, 필리핀, 미얀마,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미국, 콜롬비아

□ 발주처 / 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사업(3점)

- 발주처 지원의향 표명사업 : 사업주와 발주처 간 직접 체결한 MOU, 발주처가 사업주 앞 직접 송부한 서신 등 당사자 간 지원의향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

- 발주처의 참여 또는 추진의향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의사교환 수준의 MOU 또는 서신의 경우 가점 불인정
- **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사업** : 공적수출신용기관(ECA), 다자개발은행(MDB), 국제상업은행(IB)으로부터 LoI를 발급받은 사업
- 단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KIND, 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LoI는 제외